

# ‘금융투자상품 투자자문 표준투자권유준칙’에 관한 지침

2025.10.20 제정

## 목 차

제1장 총칙

제2장 투자자 구분 등

제3장 투자권유 희망 투자자에 대한 판매

(제1절) 투자자 정보

(제2절) 투자권유

(제3절) 설명의무

제4장 그 밖의 투자권유 유의사항

제5장 금융투자상품 투자자문 수수료의 부과 및 절차에 관한 기준

부칙

[별지1]~[별지7]

# ‘금융투자상품 투자자문 표준투자권유준칙’에 관한 지침

##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① 이 지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 제1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법시행령”이라 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 또는 “금소법”이라 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금소법시행령”이라 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이하 “금소법감독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KB국민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의 임직원이 금융투자상품 투자자문과 관련하여 법상 일반투자자 및 금소법상 일반금융소비자(이하 “투자자”라 한다)에게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절차 및 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법시행령·법시행규칙·금융투자업규정·금소법·금소법시행령·금소법감독규정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규정 등(이하 “관계법령 등”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관계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① “투자성 상품”이란 금소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을 말한다.
- ② “금융투자상품 투자자문계약 투자권유(이하 “투자권유”라 한다)”란 특정 투자자를 상대로 금융투자상품 투자자문서비스 계약(이하 “투자자문계약”이라 한다)의 체결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 ③ “포트폴리오투자”란 투자위험 분산을 목적으로 둘 이상의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포트폴리오의 구성 및 운용전략 등을 은행의 전문조직에서 결정할 것

2. 임직원이 포트폴리오의 구성 및 운용전략 등을 결정하는 경우 그 적정성을 은행 또는 책임자가 확인할 수 있을 것

④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이란 금융위원회가 고시하여 산정한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이 원금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금융투자상품으로 법시행령 제2조 제7호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을 말한다.

⑤ “숙려제도 대상상품”이란 금소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을 말한다.

1. 파생상품: 장내파생상품 및 장외파생상품

2. 파생결합증권 (단, 금적립 계좌등은 제외)

3.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4. 파생형 집합투자증권 (레버리지·인덱스 ETF를 포함한다. 다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11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해당되는 인덱스 펀드는 제외한다.)

5. 집합투자재산의 50%를 초과하여 파생결합증권에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6. 위 숙려제도 대상상품 중 어느 하나를 취득·처분하는 금전신탁계약의 수익증권(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권이 표시된 것도 포함)

⑥ “금융소비자”(이하 “투자자”라 한다)란 투자자문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 체결의 권리 및 청약을 받는 것(이하 “자문계약 체결 등”이라 한다)에 관한 은행의 거래상대방인 전문금융소비자와 일반금융소비자를 말한다.

⑦ “전문금융소비자”란 금융상품에 관한 전문성 또는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금융상품 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금융소비자를 말한다.

⑧ “일반금융소비자”란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금융소비자를 말한다.

⑨ “고령투자자”란 만65세 이상의 투자자를 말한다.

⑩ “초고령투자자”란 만80세 이상의 투자자를 말한다.

### 제3조(투자권유 및 판매 일반원칙)

임직원은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 및 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① 임직원은 관계법령 등을 준수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은 투자자가 합리적인 투자판단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투자에 따르는 위험 및 거래의 특성과 주요내용을 명확히 설명하여야 한다.
- ③ 임직원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스스로 투자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여야 하고, 그에 대한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투자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④ 임직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가 이익을 얻거나 은행 또는 제삼자가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장 투자자 구분 등

### 제4조(방문 목적 확인)

- ① 임직원은 투자자 방문시 투자자의 방문목적 및 투자권유 희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 등은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에 대하여는 투자권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투자자가 원하는 객관적인 정보만을 제공하여야 한다.

### 제5조(일반금융소비자·전문금융소비자의 구분)

- ① 임직원은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해당 투자자가 일반금융소비자인지 전문금융소비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은 법 제9조 제5항 단서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로 전환할 수 있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일반금융소비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은행에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동의하여야 한다.

### 제6조(고객 및 금융투자상품의 분류)

- ① 임직원은 투자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자문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별지 1] 「투자자정보 확인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투자자정보”라 한다)를 확인하고, 해당 고객으로부터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기명날인(이하 “서명 등”이라 한다),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1. 거래목적
2. 계약기간, 기대이익 및 기대손실 등을 고려한 위험에 대한 태도
3.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도
4. 보유 자산 중 금융상품의 비중
5. 연령
6. 기타 필요한 정보

- ② 임직원은 [별지 1]의 「투자자정보 확인서」의 평가결과와 [별지 2]의 「Scoring 기준」에 따라 고객의 거래성향을 안정형, 안정추구형, 위험중립형, 적극투자형, 공격투자형의 5단계로 분류하여야 한다.
- ③ 은행은 [별지 3] 「포트폴리오 가중평균 위험등급 산출 가이드라인」에 따라 투자자문 포트폴리오의 투자위험도를 5단계로 분류하여야 한다.
- ④ 임직원은 제2항과 제3항의 결과에 따라 [별지 4] 「고객 투자성향별 투자권유 가능 포트폴리오 분류표」를 준수하여 고객별 위험등급에 적합한 포트폴리오를 권유하여야 한다.
- ⑤ 임직원은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라 확인한 투자자정보의 내용 및 분석결과를 해당 고객에게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 제3장 투자권유 희망 투자자에 대한 판매

### 제1절 투자자 정보

#### 제7조(투자자정보 파악 및 투자자성향 분석 등)

- ① 임직원은 투자권유를 희망하는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 전에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투자자의 투자정보를 [별지 1]의 「투자자정보 확인서」에 따라 파악하고, 투자자정보 분석 결과표에 투자자로부터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은 제1항에 따라 확인한 투자자정보의 내용 및 투자자성향 결과를 고객에게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 ③ 임직원은 원칙적으로 투자자 본인으로부터 투자자정보를 파악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대리인이 그 자신과 투자자의 실명확인 증표 및 위임장 등 대리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지참하는 경우 대리인으로부터 투자자 본인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이 경우 은행은 위임의 범위에 투자자정보 작성 권한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④ 임직원은 [별지 5]에 의해 투자권유 희망 여부 및 투자자정보 제공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때 일반금융소비자가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은행은 적합성 원칙 준수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거나 설명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 은행이 설명의무를 부담하지 않음을 고지하고 상담을 종료한다.

#### 제8조(투자자정보의 유효기간)

- ① 임직원은 투자자로부터 별도의 변경 요청이 없으면 투자자 정보를 파악한 날로부터 24개월(투자자정보 유효기간) 동안 투자자정보가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 ② 임직원은 투자권유 시마다 투자자에게 투자자정보 파악에 대해 안내하고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임직원은 은행이 이미 투자자정보를 알고 있는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자정보 유효기간 경과 여부를 확인하고,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투자자정보를 다시 파악하여야 한다.

### 제2절 투자권유

#### 제9조(투자권유 절차)

- ① 임직원은 투자자정보 분석결과에 따라 투자자성향과 그 의미에 대해 설명하고 그에 적합하게 투자권유를 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은 은행이 이미 투자자정보를 알고 있는 투자자에 대하여는 기존 투자자성향과 그 의미에 대해 설명하고 투자권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③ 임직원은 투자가 본인에게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위험도의 포트폴리오에 투자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투자자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음을 알리고 자문계약 권유를 종료한다.
- ④ 임직원은 투자자문 수행 시 투자자 보호를 위해 녹취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사전에 녹취 사실을 고지하고 상품에 대한 주요 내용에 대해 투자자에게 설명하였음을 녹취하여야 한다. 녹취 의무 대상 고객이 녹취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불건전영업행위에 해당되므로 투자자문을 중단한다. 투자가 요청하는 경우 녹취한 파일을 제공하여야 한다.
- ⑤ 임직원은 투자자문 수행 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투자가 상품구조, 투자위험을 충분히 숙지하여 투자결정을 할 수 있도록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부여하고, 숙려기간이 경과한 후 투자자에게 계약의 승낙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
  1. 만65세 이상 고령투자를 대상으로 “숙려제도 대상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2. 일반투자를 대상으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 제10조(고령투자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보호 기준)

임직원은 고령투자자에게 금융투자상품 투자자문계약 체결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별지 2]의 적합성판단 기준과 [별지 6]의 강화된 고령투자자 보호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고령투자자 관련 사항 발생 시 [별지 7] 「고령투자자 상담확인서」를 징구하며, 상담 후 해당 내용을 녹취 등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 제11조(투자권유시 유의사항)

- ① 임직원은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투자자문계약과 금융투자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행위
  2.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3. 투자자로부터 투자권유의 요청을 받지 아니하고 방문·전화 등 실시간 대화의 방법을 이용하는 행위
  4. 투자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권유를 계속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각 행위는 제외한다.
    - 가. 투자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후 1개월이 지난 후에 다시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 나. 다른 종류의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5. 투자성 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면서 투자자가 요청하지 않은 다른 대출성 상품을 안내하거나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6. 관계법령과 은행이 정한 절차 등에 따르지 아니하고 금전·물품·편익 등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7. 금융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미리 알고 있으면서 투자자에게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알면서 그 사실을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고 그 금융상품의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
  8. 투자권유에 앞서 확인해야 하는 일반금융소비자의 정보를 일반금융소비자가 조작하도록 유도하거나 조작하여 권유하는 행위
  9. 금융상품 내용의 일부에 대하여 비교대상 및 기준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금융상품과 비교하여 해당 금융상품이 우수하거나 유리하다고 알리는 행위
  10. 투자가 법 제174조, 제176조 또는 제178조에 위반되는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 매매, 그 밖의 거래를 권유하는 행위
  11. 금소법 제17조를 적용받지 않고 권유하기 위하여 투자자로부터 투자자문계약 체결의 권유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서면 등으로 받는 행위
- ② 임직원은 투자자의 투자자성향 및 금융투자상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장기투자가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투자자에게 해당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장기투자를 권유할 수 있다.
- ③ 임직원은 투자자의 투자자산이 특정 종목의 금융투자상품에만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분산하여 투자할 것을 권유할 수 있다.
- ④ 숙려기간 동안 투자자에게 투자에 따르는 위험, 투자원금의 손실가능성,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 및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고지하여야 하며 숙려기간 중에는 청약을 집행하지 아니한다.
- ⑤ 숙려기간이 지난 후 서명, 기명날인, 녹취, 전자우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을 통해 회신 받는 방법, 우편, 전화 자동 응답시스템을 통해 투자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펀드 계약에 관한 청약 등의 의사가 확정적임을 확인하고 청약을 집행하여야 한다.
- ⑥ 청약 등을 집행할 목적으로 투자자에게 그 청약 등의 의사가 확정적임을 표시해 줄 것을 권유하거나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3절 설명 의무

### 제12조(설명의무)

- ① 금융 취약소비자의 경우 금융소비자의 가입시 유의사항을 다른 정보보다 우선적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금융 취약소비자란 금융상품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가 부족한 만65세 이상 고령자, 은퇴자, 주부 등 일반 금융소비자를 말한다.
- ② 임직원은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상품의 투자성에 관한 구조와 성격, 투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조건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사항 등(이하 “투자설명사항”이라 한다)을 투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설명한 내용을 투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 받아야 한다.

③ 설명의무는 단순 확인방식으로 이행할 수 없으며,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자필 또는 육성으로 진술하는 방식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1. 투자자: 본인이 이해하는 상품의 특성, 최대 위험 등

2. 임직원: 투자자의 상품 이해수준, 설명내용 등

④ 제3항에 따라 설명의무를 자필 방식으로 이행하는 경우에는 투자자가 자필로 기재한 내용을 투자자 확인을 받아 교부하여야 한다.

⑤ 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설명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복잡성 및 위험도 등 상품측면과 투자자의 투자경험 및 인식능력 등 투자자측면을 고려하여 설명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투자설명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이해하였음을 확인받아야 한다. 또한 구조가 복잡한 상품 및 위험도가 큰 상품은 상품의 구조 및 위험에 대하여 투자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⑥ 임직원은 투자자가 주요 손익구조 및 손실위험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투자권유를 계속 하여서는 아니된다.

⑦ 임직원들은 제2항에 따른 설명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은행이 작성한 상품설명서 등을 상품설명을 하기 전에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⑧ 상품설명서에는 위험등급의 의미 및 유의사항,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대한 안내 및 민원을 제기하거나 상담을 요청하려는 경우 이용 가능한 연락처 등을 포함한다. 상품설명서에는 투자자에게 설명한 내용과 실제 설명서의 내용이 같다는 사실에 대해 금소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설명을 한 사람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⑨ 임직원은 제2항에 따른 설명을 함에 있어서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⑩ 임직원은 위험등급에 관한 설명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위험등급의 의미와 유의사항, 해당 위험등급으로 정해진 사유를 함께 설명함으로써 투자자가 그 위험등급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⑪ 임직원은 투자자가 추후에도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문의할 수 있도록 자신의 성명, 직책, 연락처 및 콜센터 또는 상담센터 등의 이용방법을 알려야 한다.

## 제4장 그 밖의 투자권유 유의사항

### 제13조(계약서류의 교부)

① 은행은 투자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소법 및 관계법령에 따른 계약서류를 자체 없이 서면, 우편 또는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투자자가 요청하거나 동의하는 방식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② 은행은 제1항에 따라 계약서류를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에 의해 제공하는 경우 해당 계약서류가 위조·변조되지 않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은행은 제1항에 따라 계약서류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계약서류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된다는 사실을 해당 계약서류에 적어야 한다.

### 제14조(청약의 철회)

① 고객은 금소법 제46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철회가 가능한 투자자문계약에 한하여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제공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② 청약의 철회는 투자자가 청약철회의 의사를 밝히고 서면 등으로 신청하여 접수된 때 효력이 발생한다.

③ 은행은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받은 금전·재화 등을 반환하고,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금소법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금소법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내인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은행은 청약이 철회된 경우 투자자에 대하여 청약의 철회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 등 금전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청약의 철회에 대한 특약으로서 투자자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로 한다.

⑤ 은행은 청약이 철회된 경우 투자자에 대하여 청약의 철회에 따라 금전(이자 및 수수료를 포함)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투자자가 지정하는 입금계좌로 입금해야 한다.

## 제15조(위법 계약의 해지)

① 은행은 투자자가 금소법 제17조(적합성 원칙) 제3항, 제18조(적정성 원칙) 제2항, 제19조(설명의무) 제1항·제3항, 제20조(불공정영업행위 금지) 제1항 또는 제21조(부당권유행위 금지)을 위반하여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투자자가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수락하여야 한다.

1. 계약의 형태가 계속적일 것(법 제9조 제22항에 따른 집합투자규약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적용기간을 포함한다.)
2. 계약기간 종료 전 금융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그 계약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재산에 불이익이 발생할 것
- ② 은행은 투자자가 제1항에 따른 위법한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해당 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한다)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투자자의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은행이 다음과 같은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의 계약 해지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투자자는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반사실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시한 경우
  2. 계약 체결 당시에는 위반사항이 없었으나 금융소비자가 계약 체결 이후의 사정변경에 따라 위반사항을 주장하는 경우
  3. 투자자의 동의를 받아 위반사항을 시정한 경우
  4. 계약의 해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 위반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객관적 합리적인 근거자료를 금융소비자에 제시한 경우. 다만, 10일 이내에 투자자에 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 가. 계약의 해지를 요구한 투자자의 연락처나 소재지를 확인할 수 없거나 이와 유사한 사유로 금소법 제47조 제1항 후단에 따른 통지기간 내 연락이 곤란한 경우: 해당 사유가 해소된 후 자체 없이 알릴 것
    - 나. 금소법 위반사실 관련 자료 확인을 이유로 투자자의 동의를 받아 금소법 제47조 제1항 후단에 따른 통지기한을 연장한 경우: 연장된 기한까지 알릴 것
  5. 투자가 은행의 행위에 금소법 위반사실이 있다는 사실을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
- ④ 은행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의 해지와 관련하여 수수료, 위약금 등의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 제16조(손실보전 등의 금지)

임직원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 제103조 제3항(신노후생활연금신탁, 연금신탁, 퇴직일시금신탁)에 따라 손실의 보전이나 이익의 보장을 하는 경우, 그 밖에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1. 투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2. 투자가 입은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
3.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4.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

## 제17조(자료의 기록, 관리 및 투자자제공)

- ① 은행은 판매 관련 자료를 그 종류별로 금융투자업규정에서 정한 최소보존기간 이상 서면, 전산 자료, 그 밖에 마이크로필름 등의 형태로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 ② 은행은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자료, 위법계약 해지에 관한 자료, 청약의 철회에 관한 자료, 금소법 제28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자료 열람 연기, 제한 및 거절에 관한 자료,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등은 10년의 기간동안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 ③ 은행은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는 5년동안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 ④ 은행은 투자자로부터 판매 관련 자료를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 해당 자료를 6영업일 이내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 때문에 그 기간 안에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제공가능일자를 투자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은행은 투자자로부터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의 목적으로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 포함)을 요구 받은날로부터 6영업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영업일 이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투자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 제18조(금융투자상품에 관한 광고)

① 금융상품 광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볼 것을 권유하는 내용
2. 금융상품판매업자의 명칭, 금융상품의 내용
3.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광고 관련 절차의 준수에 관한 사항
4. 광고의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유효기간
5. 통계수치나 도표 등을 인용하는 경우 해당 자료의 출처

② 금융상품 광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금지된다.

1. 수익률이나 운용실적을 표시하는 경우, 수익률이나 운용실적이 좋은 기간의 자료만 표시하는 행위
2. 금융소비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래조건을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만들 수 있는 행위
3. 법 제31조 제3항에 따른 경영실태 및 위험에 대한 평가의 결과를 다른 금융상품 직접판매업자와 비교하여 광고하는 행위

③ 금융상품에 관한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준법감시인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④ 금융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과 불이익을 균형 있게 전달하여야 한다.

#### 제19조(투자자문업자의 준수사항)

① 임직원들은 투자자와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자료를 미리 투자자에게 제공하고 확인받아야 한다.

1. 투자자문의 범위 및 제공방법
2. 투자자문업의 수행에 관하여 은행이 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기준 및 절차
3. 투자자문업을 실제로 수행하는 임직원의 성명, 직책, 연락처 및 주요 경력
4. 투자자와의 이해상충방지를 위하여 은행이 정한 기준 및 절차
5. 투자자문계약과 관련하여 투자결과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실 및 투자자가 부담하는 책임에 관한 사항
6.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7. 임원 및 대주주에 관한 사항

② 임직원들은 투자자와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금소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투자자에게 교부하는 계약서류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재내용은 제1항에 따라 교부한 서면자료에 기재된 내용과 달라서는 아니 된다.

1. 제1항 각 호의 사항
2. 계약당사자에 관한 사항
3. 계약기간 및 계약일자
4. 계약변경 및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 제20조(투자자문업자의 금지행위)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은행이 다른 금융투자업, 그 밖의 금융업을 경영하는 경우로서 그 경영과 관련된 해당 법령에서 금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1. 투자자로부터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의 보관·예탁을 받는 행위
2. 투자자에게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을 대여하거나 투자자에 대한 제3자의 금전·증권, 그 밖의 대여를 증개·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
3. 계약으로 정한 수수료 외의 대가를 추가로 받는 행위

4.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게 투자자문업을 수행하게 하는 행위
5. 투자자문에 응하는 경우 금융투자상품 등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투자판단에 관한 자문 또는 매매 의사를 결정한 후 이를 실행하기 전에 그 금융투자상품 등을 자기의 계산으로 매매하거나 제3자에게 매매를 권유하는 행위

#### 제21조(점검)

은행은 투자권유준칙의 적정성 및 임직원의 투자권유준칙 준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 제5장 금융투자상품 투자자문 수수료의 부과 및 절차에 관한 기준

#### 제22조(목적)

본 기준은 법 제58조에 따라 은행이 투자자와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보수 부과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를 차별하여 수수료/보수 부과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투자자 또는 자산운용사 등 거래상대방(이하 “투자자”)으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보수의 부과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3조(적용 범위)

금융투자상품 투자자문 관련 수수료/보수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이 기준 및 은행의 관련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4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의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투자자문”이란 금융투자상품의 가치 또는 투자판단(종류, 종목, 취득과 처분, 취득과 처분의 방법, 수량, 가격 및 시기 등에 대한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말한다.
2. “기본수수료”란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자산에 대하여 투자자와 사전에 약정된 수수료/보수 부과기준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계약자산의 운용성과에 관계없이 투자자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를 말한다.
3. “성과보수”란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기간의 종료일에 계약자산의 운용성과에 연동하여 미리 정하여진 산정방식에 따라 투자자로부터 지급받는 보수를 말한다.
4. “중도해지수수료”란 투자자문계약에서 정하는 중도해지 수수료 부과 기간 이내에 계약을 중도해지하는 경우 투자자에게 일회적으로 부과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 제25조(수수료/보수의 부과기준)

- ① 은행은 수수료/보수 부과기준을 정함에 있어 투자자를 정당한 사유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수수료/보수는 운용자산의 특성, 은행이 부담하는 위험, 투자자의 투자규모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책정되어야 한다.

#### 제26조(수수료/보수의 부과절차)

- ① 은행은 수수료/보수를 결정함에 있어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② 투자자문 기본수수료 및 성과보수의 산정방법 및 지급시기는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투자자 등과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특히, 법 제98조의2 제2항에 따라 투자자문계약서에 수수료/보수 계산방법(성과보수 포함), 수수료 계산기간 및 지급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 ③ 은행은 투자자문 수수료/보수를 인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투자자문 계약서를 변경한 후에 인상하여야 한다.

#### 제27조(수수료/보수 체계)

- ① 투자자와 은행은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수수료/보수 지급방식 중 하나를 택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수수료 요율은 제26조 제2항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1. 기본수수료만을 지급(이하 “기본형”이라 한다)
  2. 기본수수료와 성과보수를 지급(이하 “성과혼합형”이라 한다)
- ② 성과혼합형의 기본수수료는 기본형의 기본수수료보다 적어야 한다.
- ③ 성과혼합형의 경우 운용성과가 기준수익률(Huddle Rate) 등의 성과를 초과하더라도 해당 운용성과가 마이너스 수익률을 나타낼 경우에는 성과보수를 받지 아니한다.

#### 제28조(기본수수료의 계산)

- ① 투자자문계약의 기본수수료는 기준금액에 기본수수료 요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요율은 제26조 제2항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투자자와 은행의 협의에 따라 정한다.
- ② 수수료 계산시의 기준금액은 계약금액 또는 순자산가액 중에 투자자와 은행의 계약사항으로 정한다.

#### 제29조(성과보수의 계산)

- ① 투자자문계약에 따라 운용한 결과 만기일 현재의 투자자산평가액(이하 “만기평가가액”이라 한다)이 기준자산가액에 비하여 증가하는 경우에 그 증가율이 기준수익률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하여 다음의 성과보수 요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성과보수로서 계산한다.

$$\text{성과보수} = \{ (\text{만기평가가액} - \text{기준자산가액}) \text{의 증가율} - \text{기준수익률} \} \times \text{초과분} \times \text{성과보수 요율}$$

- ② 제1항에서 성과보수 요율은 제26조 제2항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투자자와 은행의 협의에 따라 정한다.
- ③ 기준수익률(Huddle Rate)은 은행과 투자자의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 ④ 기준수익률은 기준지표(Bench Mark)에 연동하여 책정하며, 계약 시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수익률 산출 방식을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 제30조(수수료/보수 설명의무)

은행은 금소법 제19조 및 금소법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수수료/보수에 관한 사항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 제31조(수수료/보수의 고지)

은행이 투자자에게 투자자문 수수료/보수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금액 등의 투자자문 수수료/보수의 부과에 관련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32조(수수료/보수 정보의 공시)

- ① 은행은 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이 기준을 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 ② 은행은 법 제58조 제3항에 따라 이 기준을 한국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2025. 10. 20)

제1조(시행일) 본 지침은 2025. 10. 20부터 시행한다.

제2조(업무매뉴얼의 폐지) 기존의 「금융투자상품 투자자문 권리준칙 및 수수료 부과 절차에 관한 기준」을 본 지침으로 제정한다.

## [별지 1] 투자자정보 확인서

### 투자자정보 확인서

금융투자상품은 일반 예금상품과 달리 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로 인한 손실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 투자자정보 확인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고객님의 투자자정보를 파악하여, 적합한 상품을 권유해드리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고객님께 가장 적합한 상품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고객님의 정확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고객님의 상황에 부합하거나 가장 가까운 항목을 정확히 선택(V)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자 구분

일반투자자

전문투자자 (적합성, 적정성의 원칙, 설명의무 등 미적용)

#### 금융 취약소비자 해당여부

법인고객 생략

- 금융 취약소비자에 해당하시는 경우 상품 상담에 앞서 「금융투자상품 가입시 유의사항」에 대해 우선적으로 설명 들으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서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이해도가 낮거나 투자경험이 부족한 '금융 취약소비자'에 해당하십니까?
- 해당없음 (일반적인 금융상품 판매 절차 진행)     해당됨 (금융투자상품 가입시 유의사항 우선 설명)

#### \* 금융투자상품(펀드, 신탁 등) 가입시 유의사항

- 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투자상품은 운용실적에 따라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정해진 환매(중도해지)수수료 징수기간 이내에 환매(중도해지)하는 경우 환매(중도해지)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입을 결정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투자위험, 환매(중도해지)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 또는 운용자산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기타 비용의 발생 여부 등에 따라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는 보수 및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과거 운용실적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투자자 확인사항

- 「투자자정보 확인서」를 통해 파악된 고객님의 투자성향분석 결과는 영업점 창구 및 온라인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며, 고객님의 투자성향보다 높은 위험등급의 상품은 신규 가입이 불가합니다.

확인하였음

- 투자자성향분석 결과는 24개월 동안 유효합니다. 최근 24개월 이내 파악한 고객님의 투자 정보는 변경되지 않았으며, 해당 정보를 재사용하시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2021년 6월 11일 이후 투자자 정보를 파악한 경우에 한해 재사용 가능

동의 (과거 투자성향분석 결과 재사용)     동의하지 않음 (모든 항목 답변)

#### 투자자정보 파악

고객님 사항에 가장 가까운 항목을 선택(V)해주시기 바랍니다.

##### I. 다음 질문은 고객님의 투자성향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Q1. 고객님의 연령대는 어떻게 되십니까?  ① 19세 이하     ② 20대     ③ 30대     ④ 40대     ⑤ 50대     ⑥ 60대 이상

※ 법인고객 생략

Q2. 고객님의 연소득은 어느 정도 입니까?  ① 3천만원 이하     ② 5천만원 이하     ③ 1억원 이하     ④ 3억원 이하     ⑤ 3억원 초과

※ 법인고객 생략

Q3. 다음 중 고객님의 수입원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 법인고객의 경우 ②번 항목 제외

① 현재 일정한 수입(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이 발생하고 있으며, 향후 현재 수준을 유지하거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

② 현재 일정한 수입(연금소득)이 발생하고 있으며, 향후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

③ 현재 일정한 수입이 발생하고 있으나, 향후 감소하거나 불안정할 것으로 예상

④ 현재 일정한 수입이 없거나 소액연금이 주 수입원임

뒷면에서 계속 →



E003-206(210×297) 모조지 80g/m<sup>2</sup> (24, 07 개정) K73  
07101011

KB 국민은행

# 투자자정보 확인서

금융투자상품은 일반 예금상품과 달리 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로 인한 손실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 투자자정보 파악

고객님 사항에 가장 가까운 항목을 선택(V)해주시기 바랍니다.

I. 다음 질문은 고객님의 투자성향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Q4. 고객님의 <b>총 자산(부동산 등을 포함) 중 금융자산의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b>	<input type="radio"/> ① 10% 이내 <input type="radio"/> ② 30% 이내 <input type="radio"/> ③ 50% 이내 <input type="radio"/> ④ 80% 이내 <input type="radio"/> ⑤ 80% 초과
Q5. 다음 중 고객님의 <b>투자경험과 가까운 항목은 어느 것입니까?</b> (종복응답 가능)	<input type="radio"/> ① 은행 예적금, 국채, 지방채, 보증채, MMF, CMA 등 <input type="radio"/> ② 채권형 펀드, 금융채, 신용도가 높은 회사채, 원금보장형 ELS/ELF 등 <input type="radio"/> ③ 혼합형 펀드, 신용도가 중간 등급의 회사채, 원금이 일부 보장되는 ELS/ELF 등 <input type="radio"/> ④ 주식형 펀드, 신용도가 낮은 회사채,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ELS/ELF 등 <input type="radio"/> ⑤ 파생상품 펀드, 주식 신용거래, ELW, 선물·옵션 등
Q6. <b>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ELF, ELS) 또는 파생상품투자펀드(레버리지 펀드 등)에 투자한 경험이 있으신 경우 투자 기간은 얼마나 되십니까?</b>	<input type="radio"/> ① 1년 미만 (투자 경험이 없으신 경우 포함) <input type="radio"/> ② 1년 이상 ~ 3년 미만 <input type="radio"/> ③ 3년 이상
Q7. 고객님의 <b>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이해도는 어느 정도입니까?</b>	<input type="radio"/> ① 매우 높음 - 파생상품을 포함한 대부분의 금융투자상품의 구조 및 위험을 이해하고 있음 <input type="radio"/> ② 높음 - 주식, 채권, 펀드 등의 구조 및 위험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음 <input type="radio"/> ③ 낮음 - 주식과 채권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는 정도 <input type="radio"/> ④ 매우 낮음 - 금융상품 중 예·적금에 대해서만 알고 있는 정도

II. 다음은 해당 투자자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Q8. 고객님께서 투자하시는 <b>목적은 무엇입니까?</b>	<input type="radio"/> ① 자산 증식 (여유 자금 투자) <input type="radio"/> ② 노후 자금 마련 <input type="radio"/> ③ 목적 자금 마련 (결혼자금, 주택 자금 등) <input type="radio"/> ④ 사용 예정 자금 단기 운용 (전세금, 임차보증금 등)
Q9. 고객님께서 투자하고자 하는 <b>자금의 투자기간은 어느 정도입니까?</b>	<input type="radio"/> ① 투자기간과 상관없이 만기일까지 보유 <input type="radio"/> ② 3년 이상 <input type="radio"/> ③ 3년 미만 <input type="radio"/> ④ 1년 미만 <input type="radio"/> ⑤ 6개월 미만
Q10. 다음 중 현재 투자하는 자금에 대하여 <b>고객님의 기대하는 수익과 감내 할 수 있는 손실은 어느 정도입니까?</b>	<input type="radio"/> ① 기대수익이 높다면 시장 상황에 따라 원금을 초과하는 손실을 감내할 수 있다. <input type="radio"/> ② 기대수익이 높다면 20% ~ 100%의 손실을 감내할 수 있다. <input type="radio"/> ③ 원하는 수준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면 20%이내의 손실을 감내할 수 있다. <input type="radio"/> ④ 일정 수준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면 경미한 수준의 손실을 감내할 수 있다. <input type="radio"/> ⑤ 투자원금 보전을 추구한다.

투자자정보 확인서에 본인의 의사가 정확히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인)

(대리인 신청 시) 본인

의 대리인

서명(인)

재권유 금지(취소) 확인

재권유 금지 요청

재권유 금지 취소 요청

성명

서명(인)



E003-206(210x297) 모조지 80g/m<sup>2</sup> (24.07 개정) K73  
07101011

KB국민은행

## [별지 2] 투자자정보 확인서 Scoring 기준

### □ 문항별 배점

- 1번 : ①로 응답한 경우 0.5점, ②로 응답한 경우 2.5점, ③으로 응답한 경우 2.5점, ④로 응답한 경우 2.0점, ⑤로 응답한 경우 1.5점, ⑥으로 응답한 경우 0.5점
- 3번 : ①로 응답한 경우 5.5점, ②로 응답한 경우 4.5점, ③으로 응답한 경우 3.5점, ④로 응답한 경우 1.0점
- 5번 : (중복 응답한 경우 가장 높은 점수로 배점)
  - ①로 응답한 경우 1.0점, ②로 응답한 경우 2.5점, ③으로 응답한 경우 3.5점, ④로 응답한 경우 4.5점, ⑤로 응답한 경우 5.5점
- 7번 : ①로 응답한 경우 5.5점, ②로 응답한 경우 4.0점, ③으로 응답한 경우 2.5점, ④로 응답한 경우 1.0점
- 9번 : ①로 응답한 경우 2.5점, ②로 응답한 경우 2.5점, ③으로 응답한 경우 2.0점, ④로 응답한 경우 1.0점, ⑤로 응답한 경우 0.5점
- 10번: ①로 응답한 경우 15점, ②로 응답한 경우 14점, ③으로 응답한 경우 10점, ④로 응답한 경우 6점, ⑤로 응답한 경우 2점

### □ 점수 계산 방법

- 1번, 3번, 5번, 7번, 9번, 10번의 응답결과에 따른 점수를 합산(만점 36.5점)하고, 이를 100점으로 환산

(예) 1,3,5,7,9,10번의 합이 24.5점인 경우,  $24.5\text{점} / 36.5\text{점} \times 100 = 67.1\text{점}$

※ 법인인 경우 1번 문항은 scoring하지 않음 (만점 34점)

### □ 투자성향 분류

- 점수결과에 따라 고객의 투자성향을 5단계로 분류

(단위 : 점)

안정형(A)	안정추구형(B)	위험중립형(C)	적극투자형(D)	공격투자형(E)
A $\leq$ 43	43 < B $\leq$ 55	55 < C $\leq$ 68	68 < D $\leq$ 81	E > 81

※ (예시) 상기 67.1점은 위험중립형(C)구간에 속하므로 위험중립형으로 분류

### <투자자정보 확인서 Factor-Out 기준>

- 5번 질문에 은행 예적금 또는 채권형 펀드, 7번 질문에 낮음 또는 매우 낮음 선택시 공격투자형/적극투자형 포트폴리오 가입 제한
- 8번 질문에 사용 예정 자금 단기운용, 9번 질문에 1년 미만 또는 6개월 미만 선택시 안정형 포트폴리오만 선택 가능
- 9번 질문에 1년 미만 또는 6개월 미만을 선택시 안정추구형/안정형 포트폴리오만 선택 가능
- 10번 질문에 20%이내의 손실을 감내할 수 있다 선택시 공격투자형 포트폴리오 가입 제한
- 10번 질문에 경미한 수준의 손실을 감내할 수 있다 선택시 위험중립형/안정추구형/안정형 포트폴리오만 선택 가능
- 10번 질문에 투자원금 보전을 추구한다 선택시 안정형 포트폴리오만 선택 가능

### [별지 3] 포트폴리오 가중평균 위험등급 산출 가이드라인

투자자문 포트폴리오의 투자위험도는 개별 펀드의 위험도를 투자금액 비중으로 가중평균 하여 산출한다. 각 위험등급별 포트폴리오의 가중평균위험도는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공격투자형 포트폴리오	적극투자형 포트폴리오	위험중립형 포트폴리오	안정추구형 포트폴리오	안정형 포트폴리오
포트폴리오 가중평균 위험도	1.0 이상 ~ 6.0	2.0 이상 ~ 6.0	3.0 이상 ~ 6.0	4.0 이상 ~ 6.0	5.0 이상 ~ 6.0

#### ※ 참고사항

- 1) 가중평균 위험도는 각 등급별 최저 점수를 제한하고, 최대점수는 등급과 상관 없이 6.0 까지로 함.
- 2) 투자자문 포트폴리오 상품 가중평균 위험도 산출 예시
  - A펀드 : 투자비중 30% X 위험등급 2등급 = 위험기여도 0.6
  - B펀드 : 투자비중 30% X 위험등급 4등급 = 위험기여도 1.2
  - C펀드 : 투자비중 40% X 위험등급 5등급 = 위험기여도 2.0
  - 포트폴리오 가중평균 위험도 산출 결과 : 3.8

[별지 4] 고객 투자성향별 투자권유 가능 포트폴리오 분류표

포트폴리오 \\ 투자성향	공격투자형 포트폴리오	적극투자형 포트폴리오	위험중립형 포트폴리오	안정추구형 포트폴리오	안정형 포트폴리오
안정형	투자권유 불가	투자권유 불가	투자권유 불가	투자권유 불가	투자권유 가능
안정추구형	투자권유 불가	투자권유 불가	투자권유 불가	투자권유 가능	투자권유 가능
위험중립형	투자권유 불가	투자권유 불가	투자권유 가능	투자권유 가능	투자권유 가능
적극투자형	투자권유 불가	투자권유 가능	투자권유 가능	투자권유 가능	투자권유 가능
공격투자형	투자권유 가능	투자권유 가능	투자권유 가능	투자권유 가능	투자권유 가능

## [별지 5] 투자권유 희망 및 투자자정보 제공 여부 확인서

- 동 확인서는 투자자가 투자성 상품을 가입하는 경우 투자권유 희망 및 투자자정보 제공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투자자는 아래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읽고 필요한 확인 절차를 거쳐주시기 바랍니다.
- 동 확인서는 향후 분쟁 또는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 귀하의 권리구제에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 유의사항

1. 귀하께서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거나 투자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은행은 후술하는 적합성 원칙 준수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적합성 원칙(금융소비자보호법 제17조) : 소비자의 재산상황, 금융상품 취득·처분 경험 등 정보를 파악하고, 소비자에게 부적합한 금융상품의 계약 체결 권유를 금지

2. 귀하께서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거나 설명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 은행은 후술하는 설명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설명의무(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 금융상품의 중요사항을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 투자자 확인사항

상기 기재한 유의사항에 대해 설명을 듣고 투자권유 여부를 결정하신 경우 아래 각 항목의 해당사항에 체크한 후 밑줄 친 곳에 똑같이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시기 바랍니다.

#### 1. 투자권유 희망 여부

(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음 )

#### 2. 투자자정보 제공 여부

( 투자자정보를 제공함 )

(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않음 )

\* 적정성 원칙 대상 상품 거래 희망 시 체크불가

-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거나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객의 별도의사가 있기 전까지 은행이 투자 권유를 할 수 없습니다.
- 투자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 손익에 대한 책임은 모두 고객에게 귀속됩니다.

## [별지 6] 고령투자자에 대한 펀드상품 판매시 보호 기준

제1조 (목적) 이 보호 기준은 금융투자협회의 「표준투자권유준칙」에 따라 상대적으로 금융투자상품의 위험성에 취약할 수 있는 고령투자자 보호를 위해 펀드 판매시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일반적 절차 및 유의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고령투자자 보호 필요성)

- ① 고령투자자는 일반적으로 신체적인 쇠약과 더불어 기억력과 이해력이 저하될 수 있어 각별히 유의할 필요성이 있다.
- ② 또한 대부분의 고령투자자들이 별도의 소득원이 없고 잔여투자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손실이 발생할 경우 생계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 ③ 아울러 최근 금융투자상품이 구조화·첨단화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이해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투자자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 제3조 (고령투자자의 정의)

- ① “고령투자자”란 만 65세 이상의 투자자를 의미하며, 그 중 만 80세 이상은 보다 강화된 판매절차를 적용하는 “초고령투자자”로 정의한다.
- ② 해당 연령에 도달하지 않았더라도 사리분별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투자자에 대해서는 고령투자자에게 적용하는 판매절차를 준용하도록 한다.
- ③ 계좌명의인이 고령이면서 대리인이 고령이 아닌 경우 고령투자자에게 적용하는 판매절차를 준용하도록 한다. 단, 명의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만 대리신규 가능하다.

### 제4조 (투자권유 유의상품 지정)

- ① 구조가 복잡하고 가격변동성이 크거나 환금성에 제약이 있는 금융투자상품을 “투자권유 유의상품”으로 지정하고, 지정 금융투자상품을 권유하는 경우 강화된 판매절차를 적용한다.  
(예시) 레버리지 펀드 등 파생형 펀드, ELF 등 구조화펀드(원금보존추구형 제외), 특별자산펀드 등
- ② ① 항의 “투자권유 유의상품”은 시장상황에 따라 수시로 정할 수 있다.

### 제5조 (투자권유 유의상품 투자권유시 사전 확인)

- ① 판매직원이 고령투자자에게 “투자권유 유의상품”을 권유하는 경우 관리직 직원(지점장 또는 내부통제책임자)는 권유의 적정성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 ② 관리직 직원은 고객과의 직접적 면담(투자권유시 배석 등)을 통해 고객의 이해여부 및 투자권유의 적정성 등을 사전 확인하고, 「고령투자자 상담확인서」에 관리직 직원 성명 기재 및 서명 또는 날인한다.
- ③ 관리직 직원이 사전확인한 결과 고객의 사리분별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상품을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투자권유를 중단하여야 하고, 상품이 고객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과 은행이 투자권유 할 수 없는 상품이라는 점을 고객에게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 ④ 관리직 직원은 사전 확인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1. 최근 투자자 정보 변경 여부(예시: 근황 문의)
2. 투자자금의 성격(예시: 생계자금 해당 여부)
3. 투자권유 과정의 적법성(예시: 부적합 상품 판매를 위한 정보변경 여부)
4. 주요 설명내용의 이해 여부(예시: 원금손실가능성, 상품의 기본적 구조 이해 여부)
5. 사리분별능력의 현저한 변화 유무(예시: 말투, 기억수준 등 고려)

## 제6조 (녹취제도 및 숙려제도)

- ① 만65세이상 투자자에게 펀드를 판매하는 경우 전 판매과정을 녹취하고 고객이 본인의 녹취파일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대리인에 의한 요청도 포함) 녹취파일을 제공한다.
- ② 임직원은 투자자에게 녹취사실을 고지하고 투자성향 파악 단계부터 설명의무 이행 등 판매과정을 녹취한다. 고객이 녹취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상품판매가 불건전영업행위에 해당되므로 판매를 중단한다.
- ③ 만65세이상 투자자가 숙려제도 대상상품을 가입하는 경우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7조 (가족 등 조력자의 연락처 확인) 고령투자자의 경우 신변 또는 건강상태에 갑작스러운 변화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고령투자자로부터 사전에 조력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연락처를 확보해 둘 필요가 있다. 단, 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해 고령투자자나 조력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8조 (마케팅 활동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고령투자자를 주요 대상으로 각종 설명회·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경우 고령투자자를 현혹할 수 있는 허위·과장정보, 투자광고물이 사용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제9조 (초고령투자자에 대한 추가 보호방안)

- ① 만80세 이상의 초고령투자자에게는 “투자권유 유의상품”에 해당하는 상품을 투자권유하는 것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
- ② 직원의 투자권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신규가입을 원하는 경우 고객에게 적합하지 않은 상품임을 설명하는 등 판매를 자제할 필요가 있다.
- ③ 고객에게 적합하지 않은 상품이라는 점과 은행이 투자권유 하지 않는 상품이라는 점을 설명하였음에도 고객이 판매를 요구하는 경우, 투자자의 단독적인 투자판단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투자자의 가족 또는 관리직 직원의 조력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
  1. 고객은 가족 등 조력자와 함께 방문하여 조력을 받을 수 있다.
  2. 초고령투자자가 가족 등의 조력을 받을 수 없거나 가족 등에게 투자사실을 밝히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족 등을 대신하여 관리직 직원이 동석하여 초고령투자자를 조력할 수 있고 초고령투자자의 상품에 대한 이해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3. 초고령투자자가 가족 등의 조력이나 관리직 직원의 동석을 통한 조력을 받을 수 없는 경우 투자권유 유의상품에 가입할 수 없다.

## 제10조 (고령투자자 지정인 알림서비스)

- ① 만65세 이상 투자자에게 파생결합증권펀드(ELF/DLF), 파생형펀드, 구조화증권(자산유동화증권), 후순위채권 및 동 상품에 주로 투자하는 금융투자상품(공모·사모 모두 포함)을 판매할 때 투자자가 요청하는 경우 가족 등 투자자가 지정하는 제3자(지정인)에게 상품 가입 내용을 LMS로 안내해야 한다.
- ② 임직원은 은행이 투자자에게 발송한 금융투자상품 가입내용 LMS를 투자자가 지정인에게 전달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정인 알림 서비스 이용 확인서」에 투자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고령투자자 상담확인서

본 상품은 일반 예금상품과 달리 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로 인한 손실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구 분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네번째	다섯번째	여섯번째	일곱번째
고령투자자 추가확인							
가족조력제도							
관리직직원 사전확인							

### 고령투자자 추가확인

만 65세 이상

확인함

본 상품은 예금상품과 달리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상품으로, 원금손실 발생 시 KB국민은행에서 이를 보전하여 주지 않는다는 사실과 투자자산 및 투자위험, 수익구조, 보수 및 수수료, 중도해지(환매)수수료 등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한 후, 본인의 판단과 책임하에 자발적 의사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지정인 알림서비스 신청

만 65세 이상

신청

상품 계약 체결 후 가족 등 고객님이 지정하는 제3자('지정인')에게 상품 계약 체결 및 사후관리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동 서비스를 이용하실 경우, 고객님께서 지정인에게 문자메시지를 직접 전달하셔야 합니다. 신청하시겠습니까?

### 조력자 연락처 제공 신청

만 65세 이상

신청(조력자가 함께 방문하여 「필수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조력자 지정용)」별도 작성)

고객님의 신변 또는 건강상태에 갑작스러운 변화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사전에 조력자를 지정하여 연락처를 제공하실 수 있습니다. 조력자 연락처 제공을 신청하시겠습니까?

조력자 성명

연락처

관계

### 가족조력제도 신청

만 80세 이상

가족조력제도 신청(가족의 범위 : 배우자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  관리직 직원 동석 신청

초고령투자의 상품 가입 시 단독적인 판단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가족조력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족조력제도를 신청하시면 가족·후견인 등 조력자의 동석을 통해 투자결정 여부를 확인하며, 가족조력제도 신청을 원하지 않을 경우 영업점의 관리직 직원(지점장 또는 내부통제책임자)이 동석하여야만 신규가 가능합니다.

### 관리직직원 사전확인

만 65세 이상 고령소비자가 투자권유 유의상품에 가입함에 앞서 상담을 통해 투자자정보 변경여부, 투자자금의 성격, 투자권유 과정의 적법성, 고객의 이해여부 및 투자권유 적합성 등을 사전확인 합니다.

관리직직원 성명

서명(인)

고령투자자 보호제도에 대해 직원으로부터 충분히 설명듣고 이해하였으며, 위 신청사항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인)

(대리인 신청 시) 본인

의 대리인

서명(인)



E003-246(210×297) 모조지 80g/m<sup>2</sup> (21.03 개정) K45  
07101046

KB국민은행